

**투자위험등급 :  
3등급  
[중간위험 등급]**

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동양 모아드림10 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 모아드림10 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지분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동양 모아드림10 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  |
|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yam.co.kr)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 작성기준일                                | 2010년 8월 13일  |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0년 8월 19일  |
|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br>(모집 또는 매출 총액) | 투자회사의 주권 (1조주)  |
| 7. 모집 또는 매출기간<br>(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02-3770-1300, <a href="http://www.tyam.co.kr">www.tyam.co.kr</a>             |
|   | 한국금융투자협회 → ☎02-2122-0181,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 : 해당사항 없음   |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목 차

<b>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b> .....	4
1. 명칭 .....	4
2. 모집예정기간 .....	4
3. 모집예정금액 .....	4
4.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	4
5. 분류 .....	4
6. 집합투자업자 .....	4
<b>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b> .....	5
1. 주요 투자대상 .....	5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5
3. 수익구조 .....	6
4. 주요 투자위험 .....	6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7
6. 운용전문인력 .....	7
7. 투자실적 추이 (세전기준) .....	8
<b>III. 매입·환매관련 정보</b> .....	9
1. 보수 및 수수료 .....	9
2. 과세 .....	10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10
<b>IV. 요약 재무정보</b> .....	12



#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1. 명칭

명칭	동양 모아드림10 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종류	투자회사(채권혼합형)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56357

2. 모집예정기간: 모집(판매)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단축될 수 있습니다.

3. 모집예정금액: 1조주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이 투자회사는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회사로 별도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투자회사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은 투자자가 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저축만기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투자회사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형 (채권혼합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회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회사)

마. 특수형태 표시: 해당사항 없음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내용
채권	40% 이상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주식	<u>10% 이하</u> <u>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포함)</u>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금리스왑 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집합투자증권등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30%이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다만, 주식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위 ②의 주식투자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법시행령 제81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것
증권의 차입	회사자산총액의 20% 이하	법시행령 제81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것
주식 및 채권관련장 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합계액이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 내파생상품”이라 한다)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채권총액의 50%이하	법시행령 제81조1항1호 규정에 의하여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채권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이 투자회사는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A- 이상 등급)에 자산총액의 80%~90%수준으로 투자하고 잔여재산은 주식에 5%~10%수준을, 기타 단기대출로 운용

하여 자본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해 회사는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1) 채권투자전략

우량 채권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에 회사 자산총액의 **80%~90%수준으로** 투자하여, 적정 펀드 듀레이션에 의한 안정적인 이자수의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자율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 금리 상승/하락에 따른 상대적인 추가 수익 달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주식투자전략

자산총액의 5%~10%수준으로 종합주가지수 대비 안정적인 초과수익을 획득을 위하여 우량주식위주로 투자할 것이며, 수요예측시 집합투자업자의 리서치팀을 통한 계량적 기업분석 및 탐방, IR참가를 통한 정성적 분석병행과 계량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통한 분석으로 공모가에 대한 시장컨센서스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용할 것이며, 공모주 밴드가격과 적정가격의 평가를 통해 저평가된 경우에는 의무보유확약을 통한 수요예측에의 참가 및 추가적 상승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확약기간 경과 후 일정기간 추가보유할 것입니다.

**\* 비교지수: (0.05 \* [KOSDAQ]) + (0.8 \* [1년~2년(국공채)]) + (0.15 \* [CALL])**

(2) 위험관리

펀드설정 초기 설정금액, 시장여건, 운용상의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3. 수익구조**

- 이 투자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채권에 80%~90%수준으로, 주식에 5%~10%수준을 투자하는 혼합형 투자회사로서 채권과 주식투자(시스템매매 및 공모주 투자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회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회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회사는 신탁재산을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회사는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당해 투자회사는 주식, 채권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b>유동성 위험</b>	증권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b>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b>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b>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의위험</b>	회사와 같은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를 포함한 어떤 관련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b>순자산가치 변동위험</b>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회사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b>환매연기위험</b>	투자회사 재산의 매각이 불가능 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환매가 연기 될 수 있습니다.
<b>투자회사 해산위험</b>	투자회사는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 발생/주주총회의 결의/합병/폐선/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금융감독원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해산 될 수 있습니다.

(주 1)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에 자산총액의 80%~90%수준**으로 투자하고 잔여재산은 **주식에 5%~10%수준**을 투자합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될 위험이 있으며, 이자율이 상승하여 채권가격이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이 큰 주식에도 일부 투자하므로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투자회사에 비해 다소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이 투자회사는 채권 및 주식가격의 변동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동양자산운용의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b>1등급</b>	<b>매우높은위험</b>	이 종류의 펀드는 가격 변동성 또는 원금손실 가능성, 손실가능성이 가장 큰 펀드입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장내/장외파생상품 펀드로서 펀드수익변동성이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 펀드입니다. 따라서 매우 큰폭의 가격하락위험에 노출되는 펀드입니다. 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파생상품 투자펀드
<b>2등급</b>	<b>높은위험</b>	이 종류의 펀드는 가격변동성,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 환금성에도 제약이 있는 펀드입니다.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 등에 투자하므로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지만 기초자산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가격하락위험 및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펀드입니다.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에서: 주식에 5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혼합형) 펀드, 인덱스펀드, 부동산, 특별자산펀드, 원금비보장형 ELF, 투기등급 및 정크 본드를 30%이상으로 투자하는 채권형펀드
<b>3등급</b>	<b>중간위험</b>	이 종류의 펀드는 가격변동성,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펀드로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기초자산 등에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지만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가격하락위험에 노출되는 펀드입니다. 중간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에서: 주식에 50% 미만 투자하는 혼합형펀드, 원금부분보장형 ELF, 투기등급 30%미만 투자하는 채권형펀드
<b>4등급</b>	<b>낮은위험</b>	이 종류의 펀드는 국공채, 회사채(BBB-등급)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자본이득보다는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시장금리상승에 의한 가격하락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펀드입니다.

		낮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예시: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F
5등급	매우낮은위험	이 종류의 펀드는 현금, 국공채 및 단기회사채(AA수준) 등 단기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이자수익을 추구하지만 금리변동 리스크에 노출되는 펀드입니다. 매우 낮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예시: MMF 펀드

## 6. 운용전문인력

###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펀드수	설정규모	
손경수	1962	채권운용 본부장	146개	54,243 억원	- 동양증권 채권팀 (8년) - 동양자산운용 채권운용팀(5년) - 한국채권평가 채권평가본부장(5년) - 동양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현직)
이은영	1972	팀장	31개	4720 억원	- 한국투자신탁 조사분석팀(4년) - 한국투자신탁 주식운용전략실(4년) -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4년) - 동양자산운용 리서치팀 팀장(현직)

주1) 이 투자회사의 운용은 **채권운용2팀**과 **리서치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회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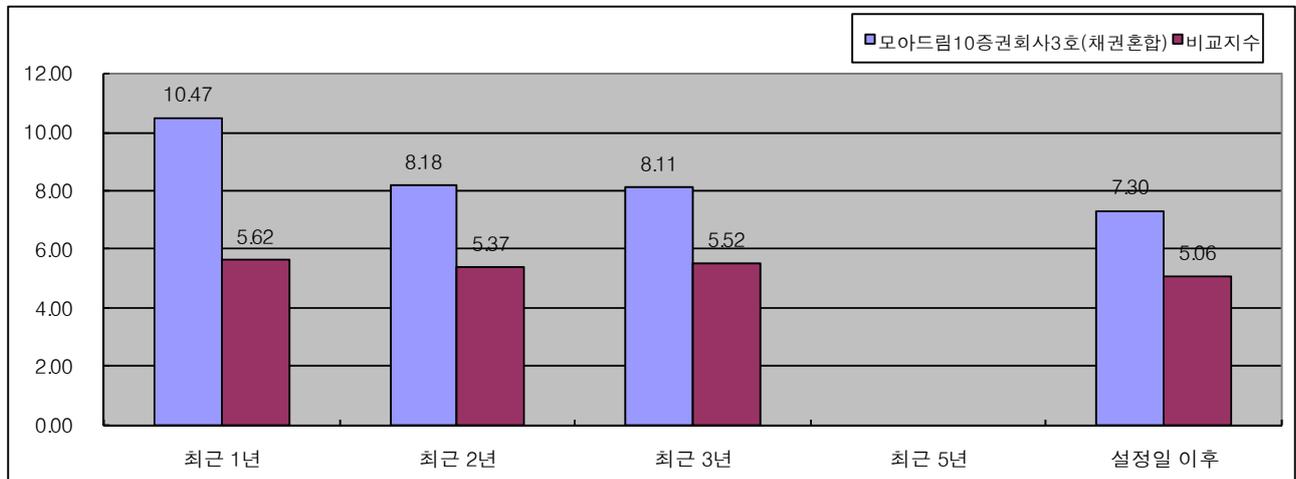
주2)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채권운용본부 : 규모 2,180억원, 펀드갯수 : 3개
- 리서치팀 : 해당사항 없음

## 7. 투자실적 추이 (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회사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회사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9.01.26 ~10.01.25	08.01.26 ~10.01.25	07.01.26 ~10.01.25		06.04.21 ~10.01.25
동양모아드림 10 증권투자회사 3(채권혼합)	10.47	8.18	8.11		7.30
비교지수	5.62	5.37	5.52		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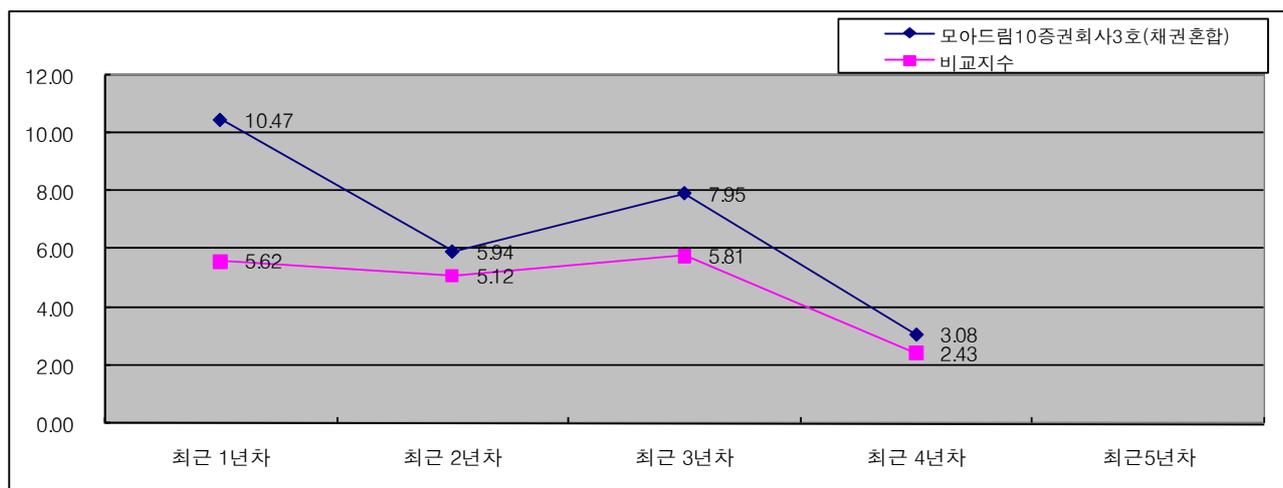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0.05 * [KOSDAQ]) + (0.8 * [1년\sim 2년(국공채)]) + (0.15 * [CALL])$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 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09.01.26 ~10.01.25	08.01.26 ~09.01.25	07.01.26 ~08.01.25	06.04.21 ~07.01.25	
모아드림 10 증권회사 3호(채권혼합)	10.47	5.94	7.95	3.08	
비교지수	5.62	5.12	5.81	2.43	

(주 1) 비교지수 :  $(0.05 * [KOSDAQ]) + (0.8 * [1년\sim 2년(국공채)]) + (0.15 * [CALL])$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 I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 1. 보수 및 수수료

- 1) 이 투자회사는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투자회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회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전환수수료	없음	전환시
환매수수료	6개월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26%	최초설립 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연 0.70%	
신탁업자보수	연 0.0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4%	
기타 비용	연 0.0562%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연 1.0862%	-
증권 거래비용	연 0.0187%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회사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 4) 총보수 비율은 이 투자회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 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1	347	602	1,330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가. 과세에 관한 사항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수익자	원천징수 원칙	개인 15.4%(주민세포함), 일반법인 14%	이익을 지급받는 날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회사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tyam.co.kr">www.tyam.co.kr</a>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http://www.kofia.or.kr</a> ) 인터넷 홈페이지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회사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매입 절차

(1) 매입방법

이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회사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17시[오후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주식의 기준가격 적용
-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주주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주식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다. 환매

(1) 투자회사의 환매

이 투자회사의 주식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17시[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주주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주식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회사는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회사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분		부담비율 (연간,%)	부담시기
환매수수료 (보유기간 이익금 기준 징수에 따라)	6개월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IV 요약 재무제표**

**1. 요약 재무정보**

[단위:원]

항 목	대차대조표		
	제 4기	제 3기	제 2기
	( 2009.09.26 )	( 2009.03.26 )	( 2008.03.26 )
운용자산	46,613,269,228	5,491,932,813	11,317,683,214
증권	45,557,473,827	5,428,266,543	11,293,695,466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055,795,401	63,666,270	23,987,748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589,708,804	225,324,205	82,751,327
자산총계	47,202,978,032	5,717,257,018	11,400,434,541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79,138,275	136,794,950	21,399,344
부채총계	379,138,275	136,794,950	21,399,344
원본	44,244,629,168	5,242,431,142	10,706,374,657
수익조정금	2,136,554,464	-182,983,175	216,391,641
이익잉여금	442,656,125	521,014,101	456,268,899
자본총계	46,823,839,757	5,580,462,068	11,379,035,197

손익계산서			
항 목	제 4기	제 3기	제 2기
	( 2009.03.27 - 2009.09.26 )	( 2008.03.27 - 2009.03.26 )	( 2007.03.27 - 2008.03.26 )
운용수익	564,610,443	615,628,635	532,899,673
이자수익	404,221,875	491,860,082	306,483,377
배당수익	0	1,752,350	990,500
매매/평가수익(손)	160,388,568	122,016,203	225,425,796
기타수익	3,006,613	3,559,120	0
운용비용	89,935,896	89,117,252	65,542,007
관련회사 보수	89,711,896	89,117,252	65,542,007
매매수수료	224,000	0	0
기타비용	7,973,565	9,056,402	11,088,767
당기순이익	469,707,595	521,014,101	456,268,899
매매회전율	1,071.34	565.59	1,224.98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